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단지 관리권자에 대한 안전관리 등 지도·감독 의무화〉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3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7.
3. 회부연월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 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권자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u>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u>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u> ----- ----- <u>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u> 1. <u>산업단지의 안전관리</u> 2. <u>산업단지의 공해관리</u> 3. <u>산업단지의 환경관리</u> 4. <u>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이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와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산업단지), ② 시·도지사(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 시장·군수·구청장(농공단지) 등을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및 제30조).

[표 2] 「산업집적법」상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제2조 및 제30조)

관리권자	관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편, 「산업집적법」 제45조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리권자로 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 기업체협의회 등이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 업무를 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표 3] 산업단지 중대사고 발생 현황

연도별	총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4	
사고건수 (건)	129		26		25		26		24		23		5	
인명피해 (명)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106	87	21	10	24	21	22	46	16	6	20	3	4	1
재산피해 (억원)	1,452.7		248		35.9		931		106.6		118.2		13	

주 1. 산단공 관할 산단 82개 중 춘천지역 15개 산단을 제외한 67개 산단 기준

2. 집계기준 :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재, 화재, 화학물질, 가스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등 소관 부처별로 각각 나뉘어 관리됨에 따라 안전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가 미흡하여 사고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표 4] 안전관리 관련 부처별 소관 업무

부처명	소관 업무	근거 법령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소방청	소방화재	소방시설설치관리법 화재예방법	소방서
소방청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서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지방환경청 +환경공단+지자체
산업부	가스안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공사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도로, 공원·녹지)	도로법 공원녹지법	지자체
환경부	기반시설(하천)	하천법	지자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안전관리·환경관리·공해관리 등 관리체계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안전관리·환경관리·공해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의할 경우 관리권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

독'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개별 기업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환경 등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가 이미 지도·감독·검사·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입주기업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고,

「산업집적법」 제48조 및 제49조¹⁾에 따라 관리권자에게는 이미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기존 관리기관은 행정지도 권한이 상실되어 산업단지 내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산업집적법」

제48조(보고 및 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입주기업체·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지도 및 감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관계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산업 단지공단 (‘25.3.14.)	○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이미 입주기업체 지도·감독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음 - 산업집적법 제49조제2항은 산업부 장관에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은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입주기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을 받거나 업무를 검사하는 적극적 행정행위 권한도 부여함 ○ 입주기업체와 현장 접점에 있는 관리기관의 경우 행정지도 권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행정지도 권한을 상실하게 됨 ○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제성이 없으므로 행정지도 의무의 강행규정화는 산단 안전·환경에 대한 실질적 예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개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관련 개별법령 등에 따른 유형별 관리체계의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